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2025년 9월 24일(수) 09:00 ~ 11:30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5F)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2025년 9월 24일(수) 09:00 ~ 11:30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5F)

CONTENTS

행사개요	03
프로그램	04
환영사	05
축사	06
대담	08
발표 1	10
발표 2	33
발표 3	45
토론	69

행사개요

취지

이투데이는 지난 15년간 빠르고 정확한 경제 뉴스를 전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진단하고, 기업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창간 15주년을 맞이하여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을 개최합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급격한 성장과 변동성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과 건강한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은 정책 방향과 산업적 혁신, 그리고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과 향후 금융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토론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행 사 명 |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부 제 |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일 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9시~11시30분

장 소 |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5F)

주최·주관 |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SI디지털경제금융포럼**

후 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DAXA
 TSCIENTIFIC 등 관련 기업

프로그램

시간	내용		
08:50~09:00 (10')	등록 및 VIP 네트워킹 리셉션		
개회식			
오프닝			
09:00~09:15 (15')	환영사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	
	축사 겸 입법계획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축사 겸 입법계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9:15~09:35 (20')	대담	디지털 자산시장의 글로벌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	
		Lily Liu Solana Foundation President 유승재 티사이언티픽 대표	
09:35~09:40 (5')	기념 사진 촬영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09:40~10:40 (60')	세션 1	주제발표 1 (20')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과 성장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A디지털경제금융포럼
		주제발표 2 (20')	디지털자산 제도도입과 시장 발전 방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3 (20')	스테이블코인이 바뀌어나갈 글로벌 금융의 미래 서병윤 DSRV 연구소장
10:40~10:50 (10')	장내 정리 및 커피브레이크장내 정리 및 커피브레이크		
10:50~11:30 (40')	세션 2	패널토론	<p>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업계 기대감과 대응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요청사항 - 스테이블 코인 및 커스터디 등 주요 사업의 혁신과 정착, 성공적 확산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정책적 방향 등 <p>[좌장]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 김경업 주식회사 오픈에셋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이사 오중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p>

환영사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이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데이 대표 이종재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자산 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다양한 포럼과 설명회 등으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에는 특히 솔라나 재단 릴리 류(Lily Liu) 회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글로벌 동향을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President Lily Liu, thank you for your keynote speech.
디지털자산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 그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지.
성장 가능성과 변동성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더구나 이 시장에는 참여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사업자, 개발자와 인프라 기업, 특히 투자자와 이용자까지.
정확한 제도의 수립 정착과 시장의 신뢰가 우선이고, 생태계 자체가 건강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투데이가 오늘 포럼의 주제를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이투데이는 올해 온라인 20년, 창간 15주년을 맞은 젊은 경제 언론입니다.
오늘 포럼은 저희 신문 창간일을 기념하기 위한 연례 창간 기념으로 기획했습니다.
또한 ‘넥스블록’이란 이름의 디지털자산시장 전문 미디어의 출범을 여러분께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 포럼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투데이와 넥스블록은 국내 금융시장, 특히 디지털 자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큰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국내 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에 결정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민병덕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먼저, 이투데이 창간 15주년과 넥스블럭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오늘 대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 금융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며
「디지털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행액 전액을 달러 현금과 단기 국채로 담보하도록 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와 직결된 안정자산이 되었고 달러는 디지털 금융 시대의
기축통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유럽연합도 「MiCA」를 시행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했고, 일본·싱가포르·홍콩·중국까지 앞다투어 제도 정비에 나서며
글로벌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고, 저는 올해 「디지털자산 3법」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유통·투자자 보호·감독 체계를 아우르는 생태계 육성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100% 이상의 준비자산을 적립하고 환매를 보장해야 하며, 거래소는 상장·심사·공시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투자자 예치금 분리 보관, 이상거래 모니터링, 해킹 사고 보상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포함했습니다.
둘째, 현물 ETF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전통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했습니다.
셋째, 토큰증권(STO) 법안은 실물자산 토큰화를 제도권 안에서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미술저작권·탄소배출권 등이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자산을 둘러싸고 규제 및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생존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디지털자산 3법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균형 있게 담아내면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솔라나(Solana)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 전략과 중요한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적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타트업과 개발자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해왔습니다.
만약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이 솔라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된다면, 한국은 원화를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원화를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스타트업과 개발자가 참여한다면 단순한 결제·송금을 넘어, 탈중앙 금융(DeFi), 게임, 콘텐츠, 커머스까지
새로운 응용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로서, 디지털자산을 무엇보다 민생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원스코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원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매시장을 확대하고, K-콘텐츠와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이 연결된다면 골목상권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 영토가 로컬에서 글로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투데이 창간 15주년과 넥스블럭 창간을 축하드리며, 오늘 대토론회가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축사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am Min Byung-du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Minjoo Party of Korea.

First and foremost, let me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15th anniversary of eToday and the inauguration of Nexblock. I also wish to sincerely thank everyone who has worked so hard to prepare this important forum under the theme, “Establishing a Healthy Ecosystem for the Digital Asset Market,” as well as all of you who have joined us here today.

The world is now undergoing a profound transformation in the digital financial order. In the United States, the GENIUS Act has brought the dollar stablecoin into the official regulatory framework, strengthening the power of the so-called “digital dollar.” By requiring that issuances be fully backed by U.S. cash and short-term Treasury securities, stablecoins have become secure assets linked directly to U.S. Treasuries. In doing so, the dollar has been reborn as the key currency of the digital age.

The European Union has also moved forward with its MiCA regulation to institutionalize euro-based stablecoins. Countries such as Japan, Singapore, Hong Kong, and China are likewise racing to establish their own frameworks, fueling global competition. And Korea, too, is keeping pace with these developments.

In 2023, our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laying down a basic safety net. Building on that foundation, earlier this year I introduced what we call the “Three Digital Asset Bills.”

First, the Digital Asset Basic Act, is designed to foster the ecosystem by covering issuance, distribution, investor protection, and oversight. It requires stablecoin issuers to hold more than 100 percent in reserve assets and to guarantee redemption. It also obligates exchanges to conduct listing reviews and make proper disclosures.

The Act also incorporates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such as segregated custody of deposits, monitoring of abnormal transactions, and compensation in cases of hacking incidents.

Second, the spot ETF bill, opens the way for digital assets to become a safe and legitimate investment option in the traditional financial market. Third, the Security Token Offering bill makes it possible to tokenize real-world assets within the regulatory system, so that real estate, copyrights, and carbon credits can all be traded on the blockchain.

The global contest over digital assets is, in essence, a struggle over regulation and currency.

Korea stands right in the middle of this contest, and we must prepare not only to survive, but to lead.

I firmly believe the Three Digital Asset Bills will provide a strong institutional foundation, one that balances investor protection with industrial innovation, and helps Korea emerge as a leader in global digital finance.

Allow me to highlight one more point. Solana—a leading global blockchain enterprise joining us here today—holds special significance for Korea’s digital finance strategy.

With its capacity to process tens of thousands of transactions per second, Solana has rapidly expanded its ecosystem of startups and developers worldwide. If Korea’s won-based stablecoin—what we call “Won-Sco”—were to be linked with platforms like Solana and Coinbase, the Korean won could spread as a blockchain-based international settlement currency.

Global enterprises could then enter new markets built around the won.

If Korean startups and developers take part in this journey, we could go far beyond payment and remittance.

We could see new application ecosystems rise in decentralized finance, gaming, content, and commerce.

This would be a chance to demonstrate Korea’s creativity and technological strength to the world.

As Chair of the Euljiro Committee of the Minjoo Party, I view digital assets not only as a matter of finance but as a matter of people’s daily lives. A won-based stablecoin could ease the burden of transaction fees for small businesses, shorten settlement times, and even allow foreign tourists to use the won directly, thereby expanding our retail markets.

And when K-content is connected with global blockchain firms, our local economies could reach out into the global marketplace. In short, our economic territory could grow from local to global.

The discussions we are holding today on “Establishing a Healthy Ecosystem for the Digital Asset Market” are not just about regulation.

They are about designing a new future for the Republic of Korea. As a legislator,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ensure that these bills are passed without delay, so that Korea can take its place at the forefront of this new global order.

Once again, let me offer my warm congratulations on the 15th anniversary of eToday and the inauguration of Nexblock.

I sincerely hope today’s forum will mark a new starting point for digital finance in Korea.

Thank you.

Min Byung-du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joo Party of Korea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대 답



Lily Liu

Solana Foundation
President



유승재

티사이언티픽 대표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1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과
성장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주제발표 2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디지털자산 제도도입과 시장 발전 방향

주제발표 3

서병운 DSRV 연구소장



스테이블코인이 바뀌나갈 글로벌 금융의 미래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1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과
성장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과 성장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회장 정유신

1

<목 차>

- I. 디지털자산의 개념과 급속한 성장
- II.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환경 변화
-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2

I. 디지털자산의 개념과 급속한 성장

▪ 개념

- 디지털형태의 모든 자산 中 분산원장 또는 DLT 하의 자산
- 암호자산(예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 STO(증권형 토큰),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CBDC, NFT, 하드디스크, SSD와 같은 디지털 기억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작물(예 : 사진, 음원) 등의 자산을 포괄함

▪ 특징

-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관련기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
 - 따라서 디지털 관련기술의 진화,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출현
- 디지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無
 - 디지털자산은 24시간, 365일 글로벌시장과 연계됨
- 기존 수직적 시스템과 다른 수평적 시스템 기반이어서 기존 법제도와의 연결, 융합에 애로
 - 특히 영미 관습법 대비 유연성이 취약한 대륙법체계에서 혁신적 수용難

3

I. 디지털자산의 개념과 급속한 성장

▪ 디지털자산의 단계적 확대과정



4

I. 디지털자산의 개념과 급속한 성장

■ 디지털자산시장의 다양화 및 빠른 성장세

- 지난 10여 년간(2015~2025년) 비트코인 가격은 약 330배(350달러 -> 11.5만 달러), 이더리움 가격은 약 8,400배(0.5달러 -> 4,200달러) 상승
- 거래량은 비트코인의 경우 2024년 기준 19조 달러로 134배, 이더리움은 5,500억 달러로 60만 배 이상
-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경우 약 2조 달러로 65배, 이더리움은 3,000억 달러로 4.5만 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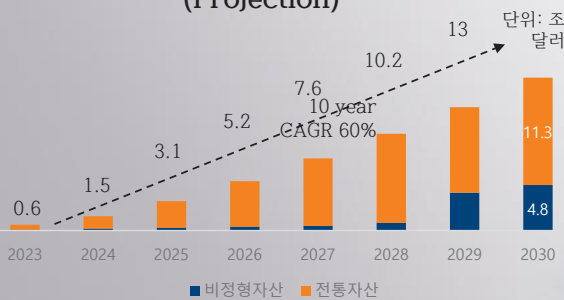


II.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환경 변화

■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확대 : BCG는 2030년 RWA시장을 16.1조 달러로 전망

-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뿐 아니라, 음악, 미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하에서 토큰화(Tokenization)함
 - 유동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글로벌시장에서 거래
 - 시공(時空) 제약 없는 데다, 비용 효율적일 수 있어 향후 급격한 거래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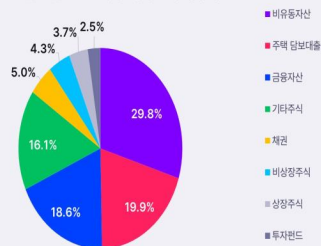
글로벌 토큰화 자산 시장 예측 (Projection)



World Economic Forum은 2030년까지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글로벌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30년 글로벌 RWA 시장 규모는 16.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2030년 글로벌 RWA 시장 카테고리 예측치



출처: ADDX & BCG, Xangle

II.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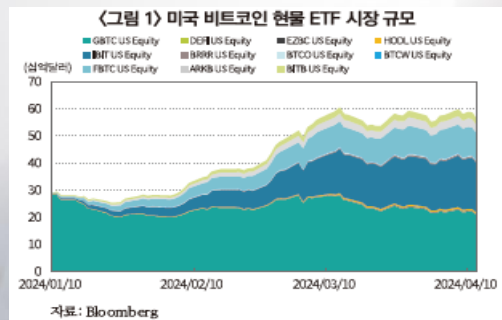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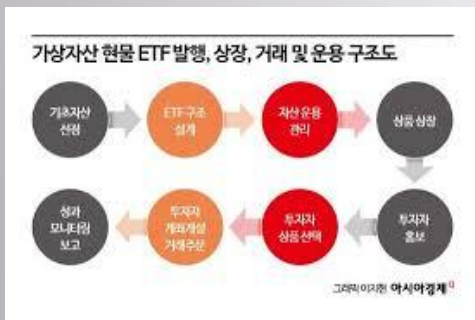
블록체인 기반 상에서의 전통 금융과 미래 금융의 융합: 예) 토큰증권(STO)



II.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환경 변화

상호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과 디지털자산시장과의 연결·융합

- 가상자산시장과 증권시장의 상호 투자
- 블랙록(BlackRock), 템플턴 등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 전통적인 증권시장의 자금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시장으로 유입
- 블랙록의 비들(BUIDL), 온도 파이낸스의 Ondo USDY 등은 미국채를 매입하는 스테이블코인
 - 가상자산자금이 이들 상품을 통해 증권시장으로 유입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주요 국가들의 규제체계의 정비 가속화

국가	규제 프레임워크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인가 등록제	특징
미국	입법·규제 명확화 추진 중	입법안 다수(연방/주), 규제안 논의	강화(SEC, CFTC, FinCEN 등)	주별/연방별 혼합, 일부 주 선도	2025년부터 명확한 규제안 마련, SEC·CFTC 관할 조정, 스테이블코인·토큰 분류 명확화
유럽연합 (EU)	MiCA 전면 시행 (2024년 6~12월)	MiCA 내 ART/EMT 구분, 강력 규제	AMLR·Travel Rule 등 전면 적용	CASP 인가제 (EU 전역 패스포트)	MiCA·DORA 등 통합 규제, 회원국별 법률 통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중시
영국	입법 진행 중, 일부 규제 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별도 추진	강화(AML/CFT 적용)	FCA 등록제	2025년 T+1 결제 등 금융 혁신과 병행, 규제안 지속 개정
일본	FIEA 등 기존법 적용, 추가 입법	스테이블코인 법제화(2023년)	강화 (FSA 감독)	라이선스제	암호자산 금융상품 분류 예정, 거래소·수탁업 등 엄격 감독
홍콩 /싱가포르	라이선스제/ 샌드박스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제 신설·강화	AML/Travel Rule 적용	라이선스제	홍콩: VATP 라이선스, 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확정, 혁신·보호 균형
아프리카 (가나 등)	2025년 본격 규제 도입 예정	준비 중	AML/CFT 도입	라이선스제	2025년 VASP 감독 개시, eCedi 테스트

9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미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비트코인 전략자산 관련 루미스법안, 증권성(nature of security)을 다루는 FIT21법안, 스테이블코인법안(GENIUS법안) 등이 상정, GENIUS법안은 지난 7월 입법화되었음

항목	주요 내용
입법 목적/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과 경제성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미국 달러 주권 보호 • 소비자·투자자 보호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토큰 등) 전반 • 증권/상품 구분(SEC, CFTC 관할) • 서비스 제공자(거래소, 커스터디 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CBDC 등 법적 정의 명확화
발행·공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이블코인 등 발행인에 대해 준비금, 정기 감사, 공시 의무 부과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IUS Act 1:1 준비금, 자본요건, 발행자허가제, 준비자산 제한 • 연방/주 이원적 규제, 상환의무 논의
서비스 제공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커스터디 등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제 논의 • OCC 해석 통해 은행의 암호화폐 업무 허용
시장 남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CFTC가 시장조작, 내부자거래 단속, 사기 및 불법행위 방지
투자자·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보호, 위험 정보 공시, 손실 책임 명확화 • 사기·불법행위 단속, 투자자 보호 강조
AML(자금세탁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CEN 등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 적용 • 준비금 출처·거래 추적 의무 강화

10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유럽과 미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규제 철학
 - MiCA는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미국 법안은 혁신 지원과 시장 주도 성장 강조
 - EU는 CASP에 대해 연간 보고서 및 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자체 보관 솔루션 사용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
- 스테이블코인 관리
 - EU는 1:1 준비자산 유지 및 유동성 요건을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국제적 금융 패권 강화에 주력
- 기술 중립성
 - MiCA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서비스 제공자에 초점, 미국 법은 프로토콜 개발자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시. EU의 경우 CASP가 환경 영향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독특한 의무 존재

11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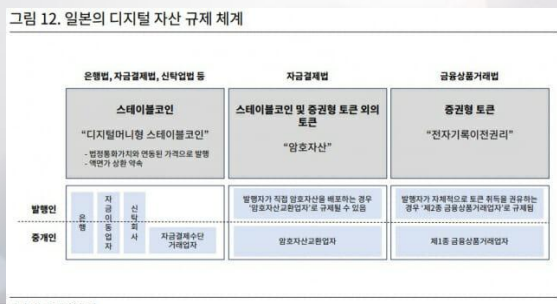
■ 유럽과 미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항목	유럽연합(MiCA)	미국
규제 체계	단일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27개국 통합)	SEC-CFTC 이원적 감독 체계
적용 범위	- 유틸리티 토큰 - 자산참조토큰(ART) - 전자화폐 토큰(EMT)	- 디지털 상품(증권 제외) - 스테이블코인(달러 기반 우선)
서비스 제공자 규제	CASP(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EU 전역 인증 의무	디지털 상품 거래소/브로커/달러 카테고리 분류
소비자 보호	- 백서 공시 의무 - 가격 정책 및 환경 영향 공개	- 자체 보관 권리 명시적 보호 - 사기 방지 강조
AML/CFT	제5자금세탁방지지침(AMLD5)과 연동 적용	재무부 주도 FinCEN 규정 적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 ART 1:1 준비자산 유지 - EMT 유동성 요건 강화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지원(달러 패권 강화)
DeFi 대응	완전 분산화 서비스만 규제 제외(Recital 22)	프로토콜 개발자/컴퓨팅 제공자 등 DeFi 활동 전면 면제
감독 구조	ESMA·EBA와 국가 감독기관 협력 체계	SEC(증권)·CFTC(상품) 이원적 감독으로 인한 잠재적 갈등

12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홍콩, 싱가포르 및 일본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홍콩은 섹터별 맞춤형 규제(핀셋 접근법)로 글로벌 웹3.0 허브를 지향
 - 증권형, 비증권형 토큰 구분과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제화를 추진 중임
 - 싱가포르는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 영역(커스터디·송금 등)에 초점
 - 국가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규제 강화
 - 일본은 자산의 성격(유틸리티 vs 분산화 자산)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
 -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 추구
 - 홍콩은 중국 본토의 전면 금지와 대비, 싱가포르는 금융허브 강화, 일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에 주력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국내 토큰증권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 확인 항목

■ 발행하려는 “상품” 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유형: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 준수 필요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소유권을 직접 분할 ⇨ 등기에: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 공적 증명력 있는 방식(예: 공과)
- 시용·수익·저분 가능 ⇨ 직접 사용 목적(예: 회원제 운동회권)

❷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무)” 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타인 발행 증권투자계약증권 ㉠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인가 필요

거래소: 증권(투자계약증권 ㉠)의 매매를 위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

※ 예시는 모두 가공의 사례로, 특정 업체와 무관함

❸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각투자등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조각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민·상법 적용 (일반적상거래)

증권성 판단, 발행·공시규제, 인가·허가·등록 필요 여부 등 확인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김영은 기자 20220428

YONHAP NEWS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전자증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분산원장도 전자등록계좌부로서 인정
 - ‘분산 원장이란 주식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및 그 관리 체계’ (전자증권법 개정안 제2조제3의2호)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려는 자로서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 (동 개정안 제2조제8호)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게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분산원장, 대주주,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요구 (동 개정안 제19조의2제2항)
- 기존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 적용
 -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의무 (현행 전자증권법 제42조 + 동 개정안 제42조의2)
- 분산원장의 권리 추정능력 인정이 법 개정의 핵심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투자계약증권 단서 조항 삭제
 -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4조제1항)
-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동 개정안 제166조제1항)
-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가 . . . 장외거래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향,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함’ (동 개정안 제166조제4항)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능력 갖게 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국내 디지털자산육성에 관한 법안

-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 의결사항 및 구성
 - 디지털자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 방향 설정
 -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 금융위 소속, 위원장 포함 20~30명 이내, 민간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 발행 및 유통
 - 법적 요건 충족한 백서·디지털자산설명서 제출 → 협회 심사 후 공시 효력 발생
 - 이용자 대상 판매 및 취득 권유 시 판매설명서 의무화
 - 국내외 발행 디지털자산 모두 통합공시시스템 등록을 통해 판매·취득 가능
- 책임 및 면책
 - 백서·설명서 작성자(발행자, 산업자) 손해배상책임 부담
 - 중요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로 투자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인정
 - 다만 상당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던 경우 등은 면책 가능
- 자본시장과 비교
 - 자본시장: 매출 발생 기업, 실질 경영현황 및 실적 심사, 정보접근 가능
 - 디지털자산시장: 아이디어 단계, 미래 전망 중심, 해외 자료 의존

III.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 국내외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기관	생태계 구축에의 기여도
정보 인프라 구축	공시, 상장, 평가, 수탁, 감사 등	금융 당국 및 가상자산 거래소, 미국의 SEC 및 OCC, EU ESMA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신뢰 기반 구축
자율 규제	공시, 상장, 평가, 수탁, 감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디지털자산육성법안 내의 '법정협회'	시장 질서 확립 및 시스템 리스크 감소
정보 분석 및 제공	온체인 데이터 분석	디지털자산 산업 및 가격 분석 기관 (예: 쟁글, 람다256)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투명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등 리스크 관리	AML, CEFT, KYC 등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제고
투자자 보호	디지털자산 및 투자 관련 교육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두나무(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장기적 신뢰 구축 및 이용자 오류 감소, 디지털자산의 Illiteracy 해소
투자 생태계 구축	디지털자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예: 헤시드, a41 벤처스)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인재·기술 개발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종류

- 법정 화폐 등에 연동되어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
- 2014년 발행된 테더가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 담보자산으로 법정화폐, 암호화폐, 상품, 알고리즘 등이 있으나, 법정화폐, 상품이 주로 쓰이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사례
법정화폐 연동 (Fiat-backed)	실제 법정화폐(USD, EUR, GBP 등)를 1:1로 보유하며 가치 연동.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	USDT, USDC, BUSD, EURC, EURS 등
암호화폐 연동 (Crypto-backed)	ETH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과담보 방식 유지. 탈중앙화 특성	DAI, WBTC 등
상품 연동 (Commodity-backed)	금·은 등의 실물 자산으로 가치가 연동되며, 실물 보유가 필요함	PAXG, XAUT 등
알고리즘 기반 (Algorithmic)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 수요·공급으로 가격 유지. 실패 리스크 존재	UST (TerraUSD, 실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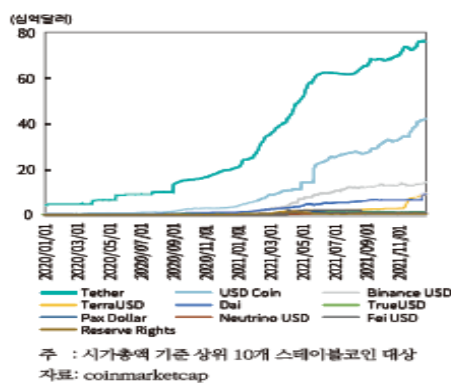
19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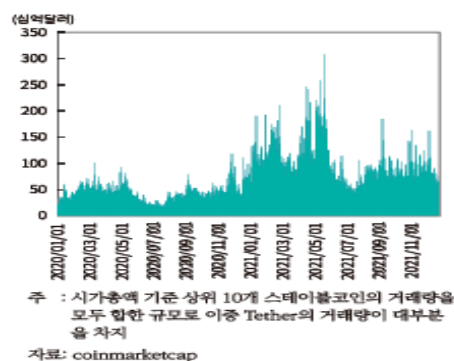
■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 혁명

- 최근 들어 국내외로 결제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장점 부각
 -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으로 시간 및 비용 효율성 제고
 - 송금의 경우 SWIFT 이용(2~3일, 5~7%의 수수료) VS 스테이블코인(1시간내, 0.1%)
- 글로벌시장에선 전자지갑 포트폴리오에 편입, 국내외로 가상자산 외에 제품의 구매에서도 활용도 점점 제고(가상자산거래 70%, 송금 10%, 제품 구매 10%)

〈그림 1〉 주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그림 2〉 주요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



20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미국의 ‘親스테이블코인 및 親가상자산’ 정책 천명
 -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CBDC를 금지한 이유
 - 국가간 CBDC로 거래할 경우, CBDC 간의 연결로 충분하기 때문에 SWIFT 시스템이나 그와 연결된 중간은행(Correspondent Bank)이 불필요
 - 중간은행과의 거래 시 필수통화인 달러 수요 감소로 달러패권 유지에 어려움 예상
 - 달러 패권 및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親스테이블코인 및 親가상자산’ 정책 천명
 - 스테이블코인의 98%가 달러표시기 때문에 글로벌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그만큼 달러 수요증가로 달러패권 유지에 도움될 전망
- 미국의 부채 부담 완화
 -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로 미국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 국채의 금리 하락, 결과적으로 미 국채 이자부담도 완화하는 효과를 겨냥
 - GENIUS법(2025.7)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현금·단기 국채 100% 준비금 의무 부과

21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스테이블코인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
 - 글로벌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 중
 - 체계적인 규정 정비는 발행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사용자에게는 혁신적 결제 활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 제공
 - 발행자 인가 제한, 1:1 준비금 확보, 투명한 공시와 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를 핵심 축으로 정비되고 있음

국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미국	GENIUS Act 제정 (2025년 7월 18일) -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한정된 발행자 선정, 1:1 준비금 보유 의무, 월별 준비금 공개,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
유럽연합(EU)	MiCA 전면 시행 (2024년 6월)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1:1 준비금 유지, 투명성·시장 안정성 확보
홍콩	Stablecoins Ordinance 통과 (2025년 5월), 시행 준비 중 (2026년 초 라이선스 예정) -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HKMA 발행자 라이선스, 고품질 준비금 요구, 리스크 관리 규정 마련
싱가포르	싱가포르 2023년 확정된 SCS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달러 또는 G10 통화로 연동된 단일화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기준 확립, 발행자 자격 요건, 준비금·자본 기준, 환매권 보장, 투명성을 핵심으로 구성됨

22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미국 GENIUS 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발행 자격	연방정부 인가만 가능, 주정부 인가 불가
발행 주체	은행 및 요건 충족 신규 사업자
준비금 요건	발행액 100% 담보 보유·예치
상환권	1:1 즉시 환매 보장
투명성	준비금 공시·외부 감사 의무
AML/KYC	은행 수준의 규제 적용
감독 구조	연준·재무부·SEC·CFTC 공동 감독
금융안정	대규모 발행 시 연준 관리
활용 범위	결제·송금·무역에 활용 허용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안정성 확보 장치

23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발행

- 발행 자격은 연방 인가제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연방 차원의 은행 감독기관 인가 필수, 주정부는 인가 불가
- 발행 주체는 은행 및 신규 발행자
 - 은행·신용조합 등 기존 금융기관 외의 신규 사업자도 요건 충족 시 발행 가능
- 준비금 요건
 - 100% 담보 및 공인 커스터디 기관에 예치 의무
 - 발행액전액에 해당하는 달러, 단기국채 또는 고신용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함
- 상환권(Redemption Right)
 - 1:1 환매, 보유자는 언제든지 동일액의 법정통화로 환매 가능, 발행자는 상환 의무

■ 시장 안정 및 감독

- 투명성
 - 준비금 현황 실시간 공개, 월간 보고 의무화 및 회계법인 외부감사 제출 필수

24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시장 안정 및 감독
 - AML/KYC
 - 발행자는 은행 수준의 규제, AML, KYC 및 CFT(테러자금방지) 준수
 - 감독 구조
 - 공동 감독위원회(재무부, 연준, OCC, SEC, CFTC 등)가 관리 감독
 - 증권형은 SEC, 파생형은 CFTC 관할
 - 금융안정 장치
 - 발행 규모가 커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연준이 관리·감독하며, 추가 규제 가능
- 활용 범위
 - 투자자산이 아닌 결제 인프라로 정의, 결제·송금·무역거래에 공식 활용 가능
- 소비자 보호
 - 발행사 파산·유동성 위기 시 소비자 자산 보호 장치 마련

25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미국 GENIUS 법이 미국내의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금융시장 안정성	신뢰도 제고	준비금 100%·감사·공시로 시스템 리스크 축소
은행·전통 금융	역할 확대	대형 은행 발행 허용, 디지털 자산과 융합 촉진
핀테크 산업	구조조정	자본력 약한 발행사 도태, 규제 적합성 중요
소비자 보호	신뢰 회복	상환권·투명성 확보로 결제·송금 확산
결제·송금 시장	효율성 향상	거래 비용 절감, 속도 개선, 중소기업 혜택
경제적 파급효과	투자여력 확대	국제 자본 유입, 금융혁신 촉진, 정책 부담 가능성

디지털 금융 시대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 전략

생산국/수출국
무역수지 흑자 → 달러 확산
기축통화 지위 약화 및 해택 감소
미국채 수요 감소
높은 국가부채 리스크 확대 (재정건전성 부각)
자본수지 적자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정책의 일례마 보완
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화
자산 토큰화 제도화

•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 = 미국채 보유
• T-Bill 수요 확보 2500억 달러 ~ 2조 달러
• 무역수지 적자 없이, 글로벌 달러 확대 가능
• 국가 부채 및 통화 가치 저지
• 실물자산 토큰화 활성화를 통해 미국 자본시장 자금 유입 → 자본수지 보완

자료: 신영증권 The JoongAng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차이

	기존	스테이블코인
시간	2~5일	수초~수분
수수료	6%대	1%대

세계은행, BC Remit 등 자료
그래픽 디자인: 최수아

26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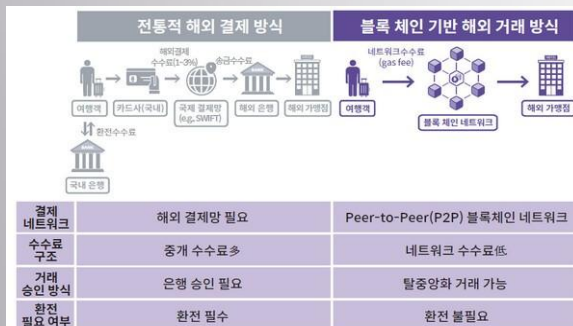
- 미국 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 준비금 100% 보유, 실시간 공시, 외부 감사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불투명성을 제거해 시장 신뢰도를 높임
 - 민간 발행사의 '런(run) 위험'을 줄이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
- 은행 및 전통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 JP모건, 시티은행 같은 대형 은행이 직접 발행 가능하며, 기존 결제·송금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할 수 있음
 -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
- 국내 결제·송금 시장 혁신
 - 기존 카드·ACH·SWIFT 대비 효율성 상승(특히 중소기업과 개인 송금효과 대) 디지털 달러화를 통한 글로벌 자본의 미국 유입 확대
 - 단, 통화정책 운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

27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미국 GENIUS 법안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달러 패권 강화	디지털 달러화 촉진	국제 결제·무역·자본 이동에서 달러 지배력 심화
규제 표준화	미국 규제 글로벌화	다국적 은행·핀테크, 미국 규제 준수 필수
신흥국 통화 리스크	달러화 가속	자본 유출·통화정책 자율성 약화 우려
금융 네트워크 재편	SWIFT 의존 약화	글로벌 결제망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동
글로벌 경쟁 촉발	위안·유로 대응	중국·EU와의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 본격화
자본시장 파급	미국 자산 선호 ↑	미 국채 수요 확대, 신흥국 금융 변동성 증가



SWIFT·CPN 국제 송금 시스템 비교

SWIFT		CPN
은행 간 메시지 전달	운영 방식	스테이블코인 기반 실시간 정산
2~5 영업일	정산 시간	실시간 수준
은행 필수	중개기관	은행 불필요
법정화폐	지원 자산	USDC, EURC 등
은행 영업시간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

자료: 스위프트 공식 웹사이트, 서울 CPN 백서

28

IV. 스테이블코인 등장, 법·제도 및 파급효과

■ 국내 입법 과제

구분	주요 규제 내용
발행인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capital buffer), 유동성·지급능력 확보 • 대주주 및 임원·내부통제에 대해 지배구조법 적용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계열사 보관관리 업무 제한 검토 • 발행·거래소·지갑 간 기능 통합 여부 검토- 백서 공시 및 정기적 업데이트 의무 • 이차지급 금지 원칙, 다만 준비자산 운용 수익은 반영 검토 • AML/CFT, IT 보안규정 적용 필요
준비자산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동성·고안정성 자산으로 구성, 신탁계정에 보관 • 일일·월간 공시 및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 • 부족분 발생 시 발행인이 즉시 채워 넣도록 규정
운영 실패 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뿐 아니라 기술적 실패도 규제 범위 포함 • 금융당국의 긴급조치 권한 명시 • 관리인 선임 절차 마련 • 준비자산으로 부족 시 채권자 안분배당, 예금자 보호대상 아님 명확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발행 USD+스테이블코인: 상장 규제 및 외국환거래법 적용 필요 • 해외 발행 KRW 스테이블코인: 국내 인가 여부 및 금지 여부 검토 (싱가포르 vs 홍콩 사례 비교)
전자금융 거래법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국가는 기존 지급결제법에 편입(싱가포르, EU), 일부는 별도 법안 제정(홍콩, 영국, 미국) • 현행 전자금융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미흡(선불충전금·IT보안 기준 적용 한계)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포함 여부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기관 중심 신고제 기반, 개인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규제 사각지대 • 가상자산거래소 등록만으로도 거래 가능 → 효과적 규제 어려움 • 블록체인 기반 모니터링 톨 개발 필요

29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토큰증권의 기대 효과

- 증권시장의 확장효과
 - 증권성을 넓게 해석할수록 토큰증권의 범위 확대되어 증권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
 - 토큰 뿐 아니라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주식도 상장 가능
- 新산업 창출효과
 - 유통시장은 투자자만 참여하지만, 발행시장은 자금조달자인 기업도 참여
 - 그만큼 생산 및 고용창출효과
 - 기초자산에 문화예술품,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되어 가치창출주체가 기업 외에 저작자, 소유권자 등 개인까지 확대되어 창업 뿐 아니라 창직(創職) 문화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기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자극 및 촉진효과
 - 증권성의 범위 규정에 따라 비증권형 토큰(가상자산)의 종류와 범위도 결정되기 때문임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투자관점에서 본 토큰증권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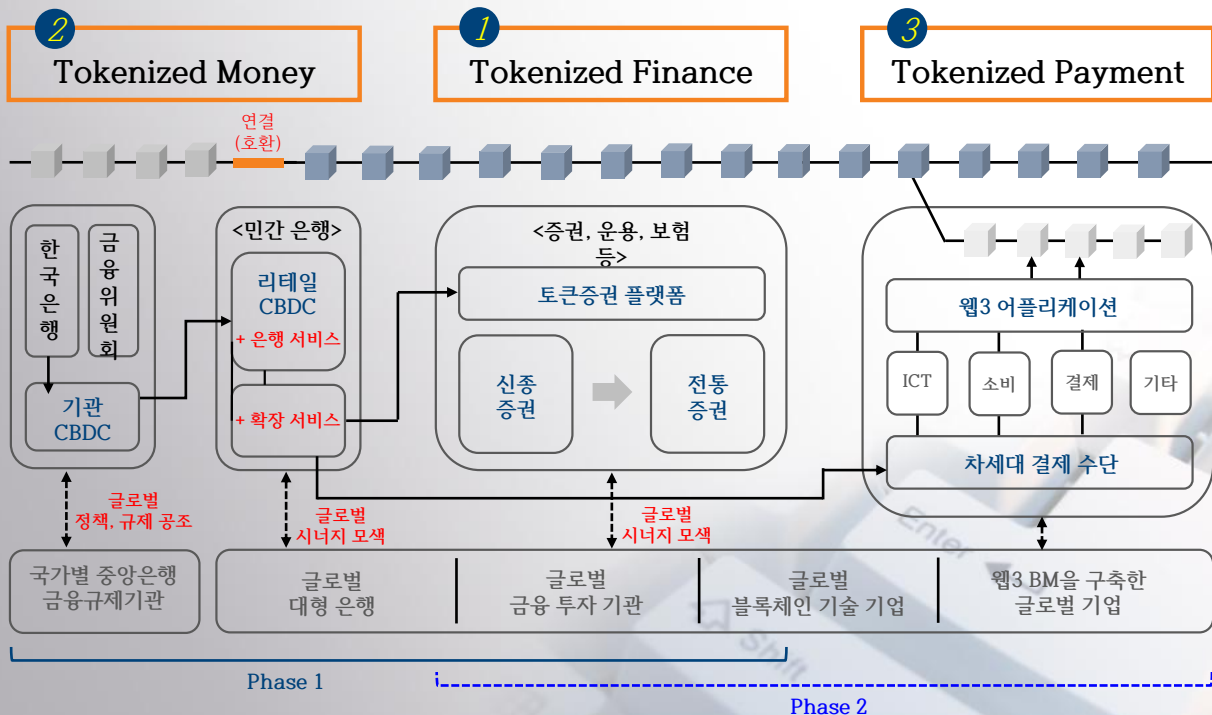
- 다양한 신상품 공급효과
 - 똑같은 기초자산이라 해도 기초자산이 워낙 많은 데다, 비정형이어서 신상품 종류도 그만큼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투자 선택폭의 증가)
 - 토큰증권의 직접 투자 뿐 아니라, 토큰증권을 활용한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일임 허용되면 일임형 랩상품으로도 확대 가능
-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효율성 제고효과
 -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전통자산에 위험-수익 프로파일이 다른 자산을 편입할 경우 동일한 포트폴리오의 위험 하의 기대수익률 제고 가능
- 수탁기관 지정을 통한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효과 기대
 - 기관투자자의 자금위탁을 통한 펀드 등 간접투자 증가효과

▪ 그러나 이러한 발행 및 유통효과를 얻으려면 과제 해결 필요

- 비정형의 리스크 및 가격산정(Valuation), 발행 뿐 아니라 유통시장 활성화, 초기 인수 활성화를 위한 마켓메이커, 총액 외의 잔액인수 또는 리턴 등 활용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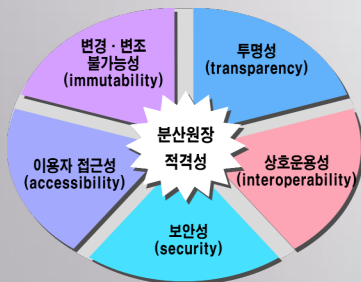
▪ 토큰증권을 시작으로 토큰화된 글로벌 웹3 생태계가 생겨날 전망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토큰증권 관련 이슈

-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의 범위' 이슈
 - 증권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리플 XRP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SEC가 확인했기 때문에 증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상자산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 1% 미만
 - 반면, 토큰증권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
- 분산원장의 허가형(정부규제) VS 개방형(민간 자율) 이슈
- 분산원장의 적격성 이슈(정량이 아닌 전문기관에 의한 정성적 판단)



- 적격성 요건
 - 전자등록기관(총량관리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노드(node)가 분산원장 거래 기록을 확인하여야 함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토큰증권 관련 이슈

- 혁신성의 이슈
 - 결제수단의 토큰화 : CBDC, 스테이블코인 등 토큰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시간 총액결제(RTGS) 활용 여부
 - 크로스 보더(Cross-Border) 거래 활성화 여부
- 발행, 유통플랫폼의 분리 이슈
 - 논리적 망(網) 분리, Chinse Wall 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적정 수익모델의 이슈
 - 투자한도확대 또는 단계적 투자한도 확대계획 발표 여부
 - 기관투자자 활용을 위한 마켓메이커(Market-Maker) 제도의 활용 여부
- 디지털자산의 다양성 인정의 이슈
- 투자자 보호와 新산업 육성의 균형 이슈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칠 파급효과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한국 금융시장에 새로운 인프라 기회와 동시에 금융 안정성 위협을 동반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자본 유출 압력을 가속화한다는 우려
 - ▶ 한국은행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고 통화량 및 금리 조절 기능을 약화한다고 우려
 - ▶ 도입 지연 시 금융·무역 경쟁력 약화 및 글로벌시장에서 소외 위험
- 글로벌 규제 변화는 한국 금융 규제 준비를 압박하는 상황
 - ▶ 미국 GENIUS법과 EU MiCA 도입으로 국제적 규제 정합성 필요성 증가
 - ▶ 국회, 10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출 가능성(자본요건 및 담보기준 포함)
 - ▶ 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내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포함할 가능성도 상존

35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칠 파급효과

- 2025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관 투자자의 단계적 시장 진입을 공식화
 - ▶ (1단계) 법집행기관(즉시), 비영리법인·가상자산사업자(25년 2분기~)의 현금화 목적 거래를 우선 허용
 - ▶ (2단계) 주권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록 법인(25년 하반기~)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를 시범 허용 (단,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후)
 - ▶ (3단계) 일반법인의 거래는 2단계 입법 및 관련 제도 정비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
- 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하여 발행(ICO)·공시·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
 - ▶ 가상자산의 투명한 상장·공시 제도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마련
 -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및 내부통제 기준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36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코인이 약 98%를 차지하며 원화 사용 감소 및 통화 주권 약화 우려 증대
- 화폐의 디지털 전환 가속에 대비해 원화 기반의 안정적 디지털 지급수단 마련 필요성이 대두
- 정부도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과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중
- 2022년 테라-루나 스테이블코인 붕괴 이후 뱅크런과 유사한 위험성이 부각되며 국제 사회의 규율 논의가 본격화
- 일본(2022 자금결제법 개정), EU(MiCA 2024), 홍콩(2023 조례)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해 선제 대응 완료
- 미국 지니어스법 입법화(2025.07), 지니어스법 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글로벌 표준 주도

37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정책 타임라인

시점	내용
2025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적극 논의 •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포함 • 금융안정·거시건전성에 따른 한국은행·금융위 신중론
2025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당(안도걸 의원), 야당(김은혜 의원) 각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 발행자격·준비자산·이용자 보호·감독 권한 명시 → 한국판 '지니어스법' 성격
2025년 10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등 정부 법안 발의 예정 •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 전망
2025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국정과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포함

38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입장과 대응

입장	대응
신중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보호 강조 발행자 진입규제에 중앙은행 인가권 부여 주장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 허용 후 단계적 확대" 제안 스테이블코인-CBDC 간 정책 조화 필요성 강조
리스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관리 규제 우회,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 무분별한 민간 발행 시 통화정책 약화 및 자본유출입 통제 어려움을 경고하며 엄격한 규율 필요성을 강조함
규제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EU의 MiCA 수준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발행사의 이용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현금·국채 등 100% 담보자산 확보, 실시간 상환·보호장치 마련 등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 업계의 스테이블코인 입장과 대응

입장	조치
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회의 창'으로 인식하며 준비 착수 은행권: KB국민·농협·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원화 기반 디지털결제 서비스 모델 개발 빅테크: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자체 결제 생태계 연계 준비 핀테크 및 블록체인: 핑거·뱅크샐러드·한패스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 출원 및 TF 구성, 신한은행 '뽕겨요' 앱 실증 테스트 진행 협력체계: 국내 은행-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테더·서클) 파트너십 논의 무역결제 비용 연간 3.6조원 절감 효과 기대

39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주요 이슈

구분	주요 내용
법적 통화주권과 민간발행 화폐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법률상 화폐 발행 권한은 한국은행에만 있음 → 민간 발행 코인은 민간 발행 화폐 논란 중앙은행 통화정책 통제력 약화 및 통화주권 침해 우려
금융안정 및 신뢰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사 준비자산 실패·신뢰 상실 시 대규모 환매(코인런) 발생 가능 지급준비 부족·자산 부실 시 은행 시스템 등 전통 금융권으로 충격 전이 가능
자본유출 및 통화환율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송금·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외화 유출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량 매도시 환율 급등락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외국인 투자자의 투기적 활용 → 단기 자본 이동 가속화 위험 외환거래법·자본시장 규제 우회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발행 주체 범위 논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중심 vs 비은행 포함
규제 공백 및 감독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법적 지위와 감독체계 부재 발행 자격, 준비자산 종류·보관 방식,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규율 기준 미비 감독당국은 은행 등 규제기관 한정 주장 vs 핀테크·비은행 업계는 민간 플랫폼 개방 필요 주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 다양화 이슈

40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과제

구분	주요 내용
안정성과 신속성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비 빠른 제도화 필요 동시에 안전장치 마련 병행 → “신속한 도입과 충분한 규제의 균형” 강조
명확한 발행·준비자산 기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 자격(인가 요건), 담보자산(현금·국채 등 100% 준비), 1:1 상환 보장 기준 확립 필요
기관 간 협력 및 감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주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 필요 미국 GENIUS Act 사례처럼, 재무부·연준·FDIC 등 다 기관 공동 심사·인가 체계를 참고 가능
신뢰 및 활용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자산 투명 공개와 1:1 상환 보장으로 신뢰 확보 실생활 결제·송금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수요 창출 중요
CBDC 병행 추진 및 국제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분담·상호보완 설계 필요 국제 규제 기준과의 호환성 확보 및 글로벌 공조 요구

41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분야 및 인프라 구축

구분	세부 분야	비고
활용 분야 확대	해외송금·무역결제	교역기업 B2B 정산, 해외송금 비용 절감, 실시간 결제 가능
	간편결제·전자상거래	빅테크 페이(카카오·네이버·토스) 탑재, 정산 비용 절감, QR·NFC 확장
	게임·메타버스·K콘텐츠	아이템 구매·글로벌 팬덤 결제·K콘텐츠 유통 수단으로 활용
	관광·지역경제	외국인 관광객 결제, 지자체 지역화폐 대체, 정책 연계형 설계 가능
	디지털 자산(STO·RWA)	증권형 토큰, 실물자산 토큰 거래 정산에 활용, “디지털 증권·화폐” 패키지
인프라 및 기술 확충	B2B 공급망 금융	대금 실시간 정산, 현금흐름 개선, 거래 기록 통한 신용평가 활용
	결제 인프라 표준화	금융결제원·PG·빅테크망 연동, POS·QR·NFC 등 단말기 표준화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	싱가포르 MAS·홍콩 HKMA 등과 브리지 구축, 해외송금 핀테크 연계
제도 및 감독 정비	지급준비·안정성	1:1 페깅 유지, 지급준비금·예치금 제도,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 정산
	디지털 자산 연동	STO 네트워크 및 CBDC와 호환성 검증, 상호운용성 확보
	법제 정합성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외환거래법 충돌 해소
정책·거버넌스 수립	국제 규제 대응	GENIUS Act, MiCA 등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AML·KYC·트래블룰 강화
	감독 체계	발행사 회계 감사, 준비금 운용 투명성, 리스크 관리·정기 공시
	이중 규제 해소	PG사 자금관리·외환거래법 등 중복 규제 조율 필요
	민관 협력	은행·핀테크·빅테크 공동 컨소시엄, 한국은행·금융위는 가이드라인 감독
	시범사업·단계적 확대	규제 샌드박스 활용, 일부 서비스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42

V. 정책 및 민간 대응방안

- ‘디지털산업은 신산업인가?’ 여부
- ‘Digital Globalization의 개막!’
- ‘스테이블코인은 결제혁신이다!’
- ‘모든 RWA를 토큰화’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성비와 달러패권)
- 수직(Vertical) + 수평(Horizontal) = 하이브리드(Hybrid)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 디지털자산이 금융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2



디지털자산 제도도입과 시장 발전 방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디지털자산 제도도입과 시장 발전 방향

2025. 9. 24.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

1.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

디지털자산시장의 제도화 기본 방향

• 가상자산시장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시장 규율의 기본을 마련
 - 발행인 자격요건, 발행공시, 유통공시,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스테이블코인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일부 또는 별도의 법체계로 마련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음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84,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98,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토큰증권시장

-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시장 규제체계를 마련
 - 토큰증권을 증권외의 한가지 유형으로 인식하여 증권에 대한 포괄적 규제 적용
- 토큰증권과 토큰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 마련 필요
 - 증권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장에 예측가능성 부여

디지털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호연결성

• 디지털자산과 금융시장의 통합

- 디지털자산이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전통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에서 핵심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은행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

- 디지털자산 보유 및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보유는 불가피한 방향성이 될 가능성 높음
- 디지털자산(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관련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도록 허용 여부 결정(가상자산 현물 ETF, 가상자산 선물거래 등)
- 디지털자산의 수탁기관 자격
 - 전통적 신탁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또는 제3의 공적 기관

2단계 입법: 개요

• 정부 정책방향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진행하고 있음(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15) 참고)
 - 정부의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체계 마련
 -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
- 영업행위 측면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에 관한 규제체계 마련
- 자율규제 측면에서는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
-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도 2단계 입법안에 포함시켜 검토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 준비

2단계 입법: 주요 내용(1)

• 발행인 자격

- 가상자산 발행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고, 발행인과 이용자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 자격을 시장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
- 자격: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및 해외의 법인으로 제한
 - EU의 MiCA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을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의무: 이용자로부터의 자금모집 가능성을 감안하여 공시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 시 책임을 무겁게 부여
 - 발행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발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디지털자산신고서나 백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경로를 통해 공시
- 발행자의 공시는 거래자(또는 이용자)들이 해당 디지털자산의 구조와 위험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해외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령들은 공통적으로 공시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2단계 입법: 주요내용(2)

• 발행공시

- 발행공시는 신규로 발행되거나 매도될 디지털자산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거래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알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
 - 발행공시를 통해 해당 디지털자산의 구조적 리스크, 발행인 관련 중요한 사실, 수익구조 변동 등 모든 중요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디지털자산신고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발행 가능
 - 신고서에는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관한 사항,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 인력의 이력과 정보,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정보, 디지털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계획 정보, 총 발행량과 기간별 발행 또는 채굴량에 관한 정보, 이용자 보호 계획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발행인의 존재를 뚜렷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디지털자산의 경우 해당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가 발행공시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2단계 입법: 주요내용(3)

• 공시내용의 변경

- 디지털자산신고서의 중요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중요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시하도록 의무 부여
 - 디지털자산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투자정보(material information)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효율적으로 공시되어야 함
- 디지털자산이 상장(또는 거래지원)된 후 가상자산계획서의 중요 내용에 변화가 생기거나 현재의 상황과 일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신속히 공시하도록 의무화
 -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를 참고하여 정기공시와 더불어 수시공시, 조회공시, 정정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해외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도 디지털자산신고서나 백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시장참가자의 투자판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이 디지털자산신고서나 백서의 변경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EU MiCA §11, 미국 FIT 21 §303 등 참조

2단계 입법: 주요내용(4)

• 진입규제

- 디지털자산시장의 안정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 문제업체의 사전봉쇄, 시장 신뢰와 질서 유지 등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의 진입규제 필요
 - 부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할 경우 부도·파산 등으로 전체 시스템의 연쇄 위기를 야기할 수 있고 이용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최소 자본금, 건전성 기준, 경영진 요건 등 엄격한 진입요건을 두고, 재무능력·경영건전성·지배주주 적격성 등을 사전에 심사
 -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금지, 진입요건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유지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 변경등록 신청 및 등록최소에 대한 규정 마련,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의무사항,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제방안 마련
- 진입규제는 사업내용에 따라 인허가 방식, 등록방식, 신고방식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높음
 - 현행 특금법은 신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서비스업자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내용을 감안할 때 인허가방식과 등록방식을 모두 도입하여 적절한 규제수위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등의 특성을 고려

2단계 입법: 주요내용(5)

• 영업행위규제

-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디지털자산을 영위하여야 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규제는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되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사업에 특화된 영업행위 규제도 마련할 필요
-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포괄적 신의성실의무, 방화벽의 설치, 설명의무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계약서류 제공의무, 디지털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손해배상 책임,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손실보전의 금지, 약관제정에 관한 사항, 수수료 규제,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의 비밀보장, 임직원의 디지털자산 매매, 자율규제 등에 관한 보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해외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도 대부분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자율규제 등에 관한 영업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2단계 입법: 주요내용(6)

• 자율규제

- 디지털자산산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인 자격을 가진 협회를 설립하여 자율규제 및 자율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디지털자산협회 주요 업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회원에 대한 감리
 -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 디지털자산산업의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 회원 및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및 연수
 - 디지털자산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예를 들어 디지털자산운용인력, 매매권유자문인력 등)

2. STO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에 대한 이원적 접근법
 - 정부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통한 규제, 토큰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제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해외의 입법례들도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와 일반적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분리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토큰증권은 전통적인 증권이 DLT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방식과 관리방식을 바꾼 것이므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토큰증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권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의 Howey Test를 참고하여 토큰증권과 토큰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 자본시장법은 아직까지 토큰증권을 증권의 유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된 제도 및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

토큰증권에 대한 증권성 판단기준

- 정부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4.28)
 - 금융상품(토큰증권 포함)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자의 운영 노력 없이는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투자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유통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거래 여부·장소를 결정하고, 유통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 가격상승 또는 투자 손실 방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수익, 가치, 가격상승 또는 손실방지를 가쳐올 수 있는 사업자의 노력, 경험과 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 포인트로 제시된 경우 등

토큰증권: 전자증권법 개정방향(1)

- 증권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 증권발행의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을 정의
 - 분산원장을 주식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 체계로 정의
 - ①주식등에 관한 정보, ②시간순서, ③다수 참여자에 의한 공동 기재, ④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한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의 보호, ⑤장부 및 그 관리 체계 등을 요건으로 함
 -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 증권을 분산원장등록증권으로 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의 전자등록업무를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분산원장, 대주주,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토큰증권: 전자증권법 개정방향(2)

	구분	내용
전자증권법 개정방향	분산원장을 이용한 전자증권 도입	◦(분산원장 정의) 분산원장 기술을 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의 규정
		◦(분산원장의 이용과 책임) 분산원장을 허용하면서 요건·방법을 정하고 분산원장의 기재·관리의 법적 책임주체 규정
		◦(파기의무 특례) 기재정보의 물리적 파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신용정보 파기의무 특례
		◦(제재처분) 분산원장의 요건, 이용방법 등 위반시 제재처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의무,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
		◦(분산원장 이용의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항상 분산원장 이용 ◦(감독 및 제재) 초과분 해소의무 이행을 위한 재원 적립의무, 등록 말소제도, 분산원장 의무이용 등 위반시 제재

자료: 국회 정부위원회(2025)

토큰증권: 자본시장법 개정방향(1)

-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 마련
 -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
 -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
 -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

17

토큰증권: 자본시장법 개정방향(2)

	구분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투자계약증권 유통규제) 유통 관련 규제공백 해소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등에도 자본시장법상 유통 규제제도 전면 적용
		◦(장외거래중개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중개하는 장외시장 허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외시장 투자한도 제한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2025)

18

해외의 토큰증권 제도 도입(1)

	주요 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호증권) 암호증권등록부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 독일은 전자증권을 물건으로 의제 → 암호증권도 물건 의제 □(관리책임) 발행인이 스스로 암호증권등록부의 관리자가 되거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위임 허용 ▣ 불명확하지 않으면 발행인을 관리자로 간주하며, 관리자는 증권예탁기관이나 보관기관일 필요 없음 ▣ 관리자는 전자등록부 관리자로서 동일한 책임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등록부가 현재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며, 위반시 재산상 손해를 배상 - 위조 등 데이터 손상이나 권한 없는 데이터 변경을 방지 □(분산원장) 시간 순서에 따라 데이터가 기록되고 권한 없는 말소와 변경으로부터 데이터가 보호되는 기록 시스템 ▣ 기술요건 없이 암호증권등록부 관리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관리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하도록 하는 구조 ▣ 증권은 권리자(양도인)의 지시에 기초한 대체등록을 통해 양도 □(대상) 무기명 채권(이익참가증권 포함)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2025)

19

해외의 토큰증권 제도 도입(2)

구분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기록이전권리) 사업수익 분배 등 투자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유가증권 등 → 금융상품거래법(자본시장법) 규제 ▣ 기존 전자증권 제도의 대상인 주식, 채권, 펀드 수익증권 제외 → 지분회사 사원권, 신탁수익권, 집단투자지분 등 □(전자증권) 전자증권법에는 분산원장을 도입하지 않아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방식 이용 * 금융상품거래실무상 약관으로 계약상대방의 승낙을 위탁받고 있으며, 샌드박스를 부여받은 거래 플랫폼의 경우 확정일자 있는 공증으로 간주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토큰) 자본시장 상품을 구성하는 디지털 토큰은 증권선물법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주식, 채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상품 □(사례) ADDX 등은 예탁자로서, 예탁부 관리 방식으로 분산원장을 사용하고, 약관에서 전자지갑을 투자자 계좌로 간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법령 정비 없이 현행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 적용 □(사례) 증권을 미발행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해 명의개서 하는 방식 다수 활용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2025)

20



The World's Leading Capital Markets Think Tank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3



스테이블코인이 바뀌나갈
글로벌 금융의 미래

서병운 DSRV 연구소장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스테이블코인이 바뀌나갈 글로벌 금융의 미래

DSRV® 서병운 CSO·미래금융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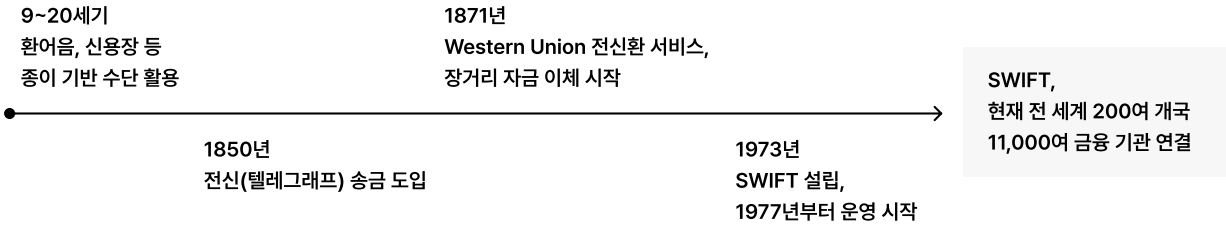
Part 1.

스테이블코인, 거대한 금융시스템 전환의 시작

환어음, 전신환부터 VISA, SWIFT의 등장까지

DS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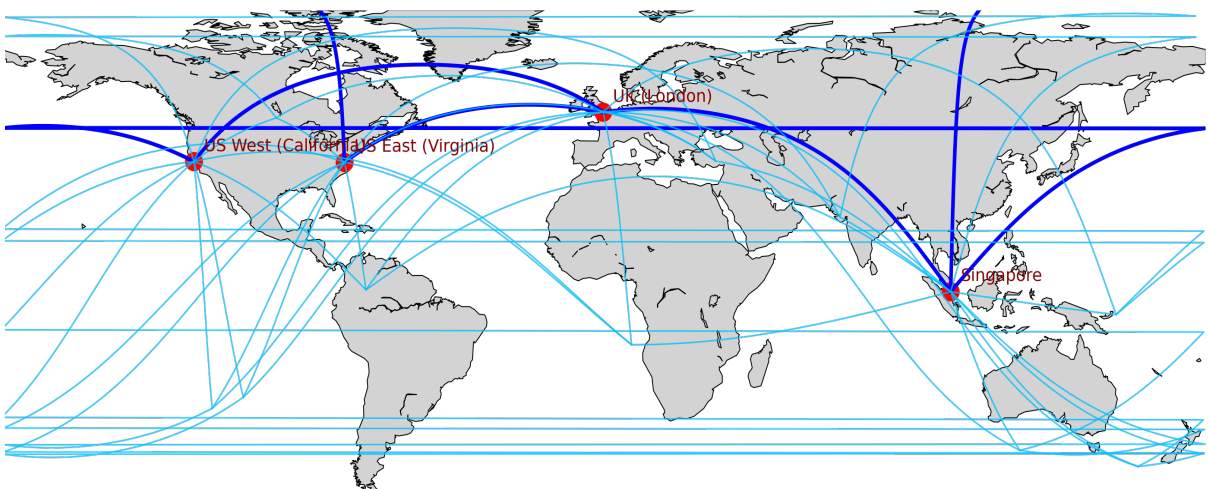
1973년 SWIFT 시스템이 등장하여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았으나, 여전히 국제송금은 비효율적
 평균 6% 내외 수수료와 환전마진 + 송금까지 평균 2~5영업일 소요



VISA, 1976년 이후 수백조를 들여 전세계를 잇는 폐쇄망 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

DSRV.

VISA사의 데이터센터는 미국 동/서부와 영국, 싱가포르 등 4개 지역에 위치, 이를 각 은행 및 카드사와 전용망으로 연결
 VISA는 매년 약 30억 달러를 기존회선의 유지 및 확장에 투자(→ 선점효과를 통해 2024년도 영업이익률 약 66%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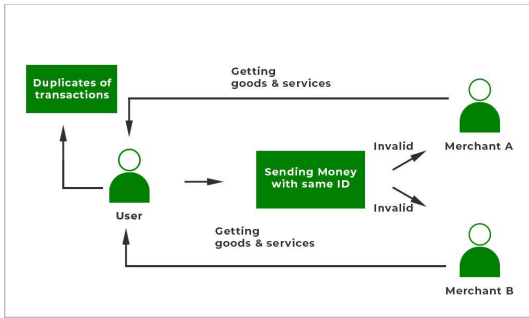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

DS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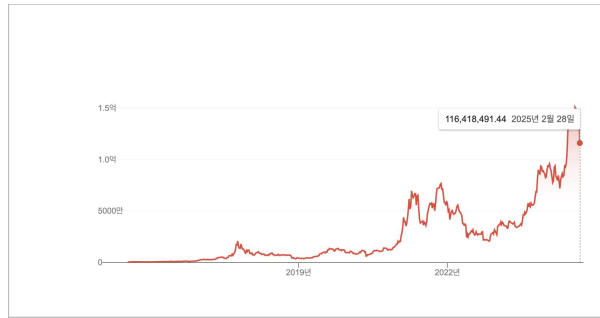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인없이 전세계 어디로든 돈을 보낼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상 최초의 사례
그러나, 가격 변동성과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송금 수단으로서의 사용은 다소 제한적

이중 지불 문제



Source: GeeksforGeeks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 추이



Source: Google

Blockchain, 암호학을 통해 인터넷을 금융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DS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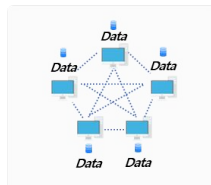
비트코인, 인터넷의 등장 이후 30여년간 암호학계가 풀지 못한 Double Spending problem을 해결한 PoC(Proof of Concept)
전세계와 연결된 인터넷망을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금융망으로 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압도적인 비용효율성 달성 가능

기존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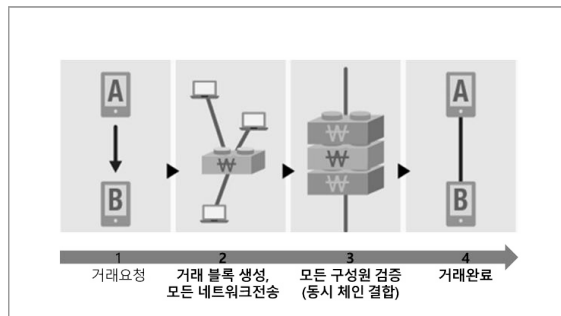
거래 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의 서버에 집중

블록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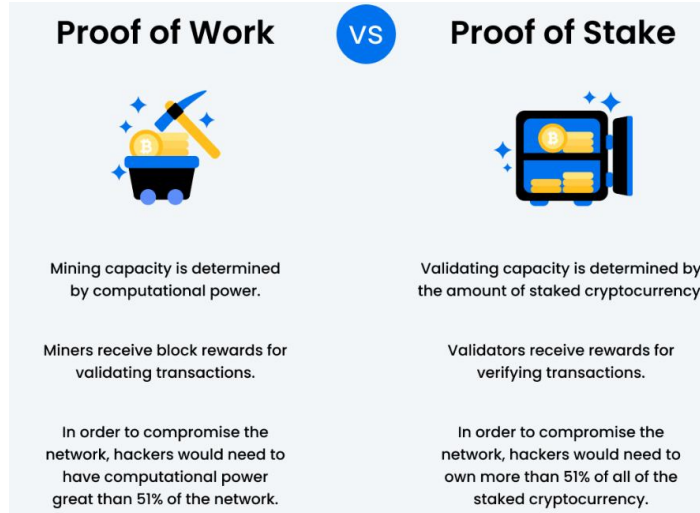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음 (탈중앙화)

프로세스



작업증명(PoW) vs. 지분증명(P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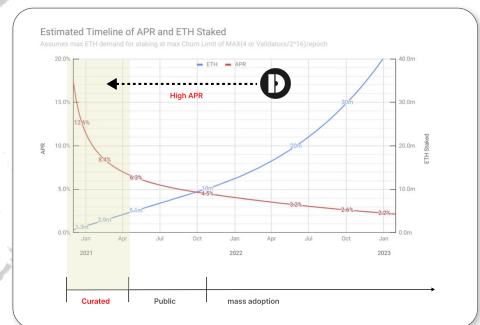
DSRV.



전세계에 위치하는 밸리데이터들이 네트워크 위의 거래기록을 실시간으로 검증

DSRV.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검증권한을 가진 밸리데이터가 블록을 생성하고 전세계로 전파
다른 노드들이 교차검증하고 이상없음을 회신하면 블록이 확정되어 이전 블록과 연결



Ether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3가지 방식으로 활용

DSRV.



- 1. 자산(Asset)** :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동하는 자산 그 자체
- 2. 거래수수료(Gas Fee)** :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기본 수수료(Base Fee) + 급행 수수료(Priority Fee)로 구성
- 3. 검증보상(Block Reward)** : 검증인(Validator)이 블록 내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한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Ether 대신 USD 거래를 기록하고 Ether로 수수료를 지불

DSRV.

Etherscan Home Blockchain Tokens NFTs Resources Developers More | Sign In

Transaction Details < > Buy Presale Play Gaming

From	To	Value	Gas
0x0766244fba4...	Transfer	23109878	16 secs ago
0x4ec5561499...	0x2213bc0b	23109878	16 secs ago
0x077a9c0c88...	Approve	23109878	16 secs ago
0x84699812ef1...	Transfer	23109878	16 secs ago
0x296f72cb591...	Transfer	23109878	16 secs ago

TRANSACTION ACTION
Transfer 71.63 (\$71.62) USDC to 0x3E1F17719107688637ec002A8343943E2D2782e3

Transaction Hash: 0x84699812ef1e817cacab29f52612ed2feeeefca1ce6ae634cd4df73237b16aa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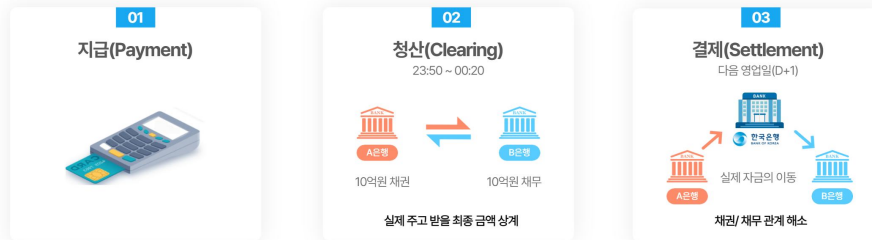
Status: Success

Block: 23109878 3 Block Confirm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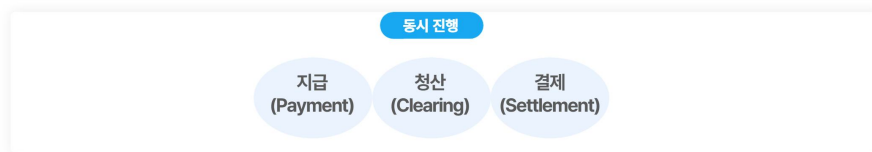
Timestamp: 34 secs ago (Aug-10-2025 09:51:23 AM UTC) | Confirmed within 8 secs

별도의 폐쇄망 대신, 인터넷망을 금융망으로 사용 → 지급/청산/결제 전 과정 동시 진행 **DSRV.**

01. 현재 결제 시스템(폐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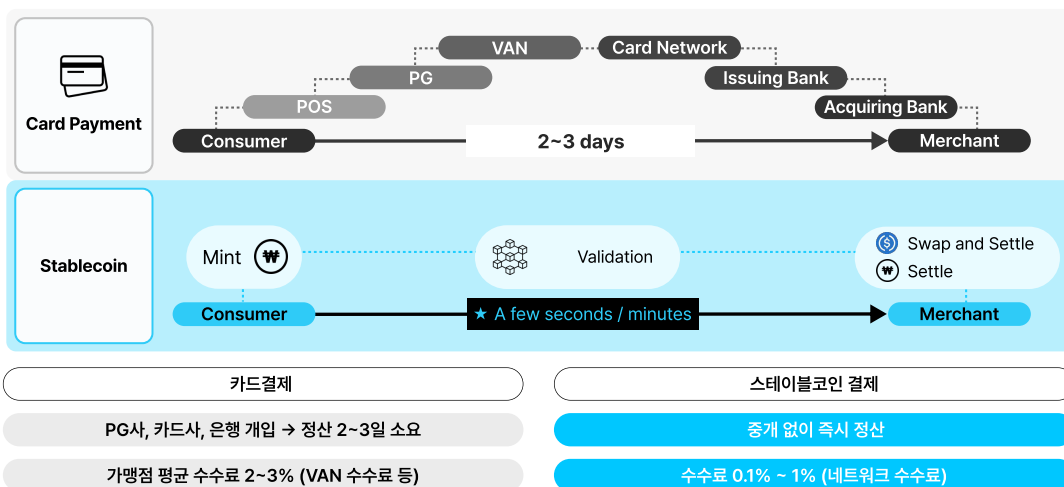


02.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인터넷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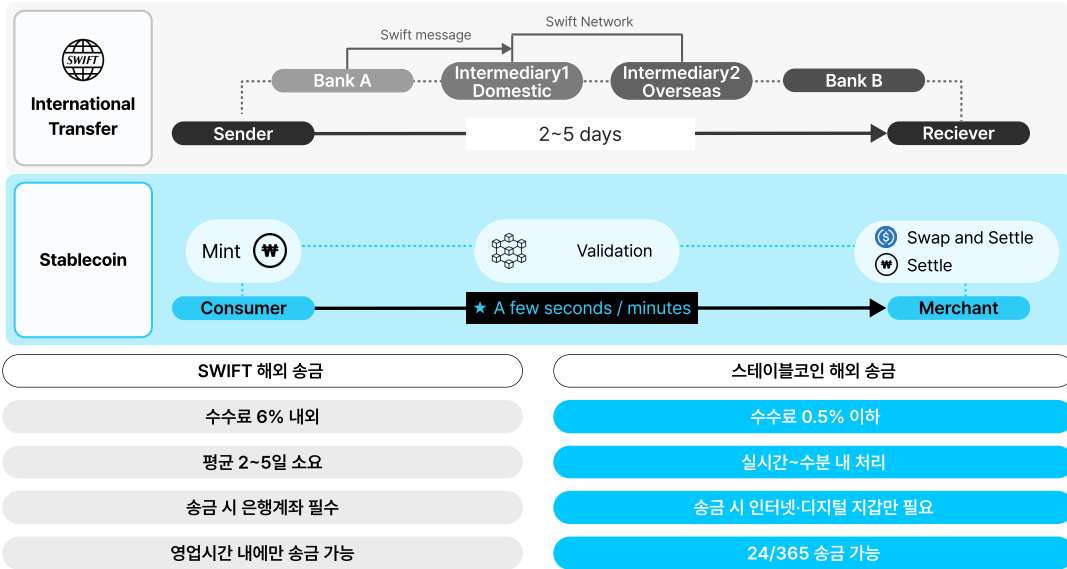
카드 결제 vs. 스테이블코인 결제

DSRV.



SWIFT 해외 송금 vs.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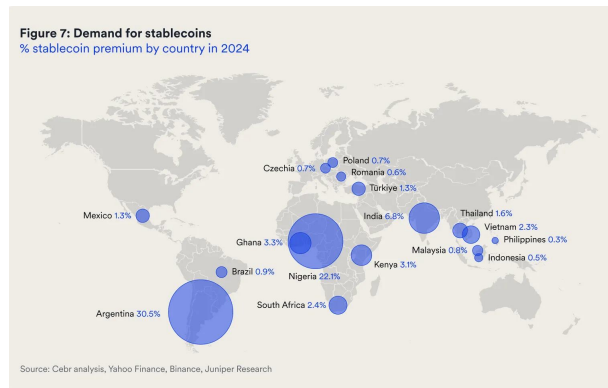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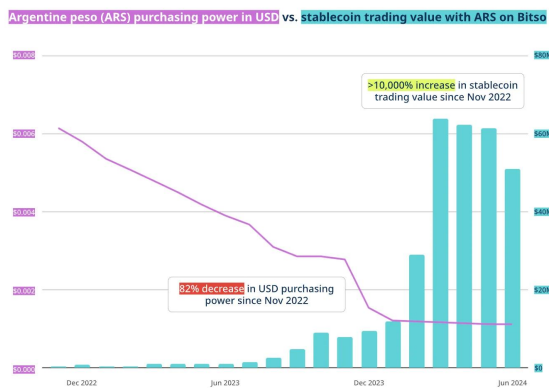
DSRV.



결제 인프라로서의 가능성 - 역설적으로 제3세계에서 먼저 증명

DSRV.

달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달러로 대체재 가능
구매력 보존 수단으로 활용(Dollarization) 가능



스테이블코인, 다음 세대의 금융 인프라

Phase	결제 네트워크	주요 화폐	특징	결제 프로세스
기존 금융 결제 시스템	Swift VISA	\$ 달러 ¥ 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자로 인한 높은 수수료(2-6%) • 복잡한 구조로 인한 느린 정산 속도 • 네트워크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 	
크립토 결제 시스템	블록체인 인터넷망	비트코인 이더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자 없어 낮은 수수료(가스비) • P2P 직접 거래로 신속한 정산 • 단, 높은 화폐 변동성이라는 한계 존재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USDT US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성 없는 가치 안정성 • 0에 수렴하는 수수료 • 신속한 정산 • 글로벌 결제 용이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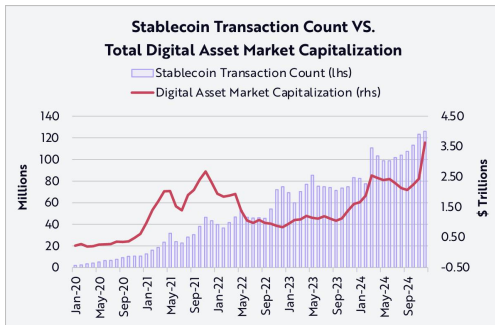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 거대한 금융시스템 전환의 시작

가상자산 시장 사이클을 넘는 수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성장

DS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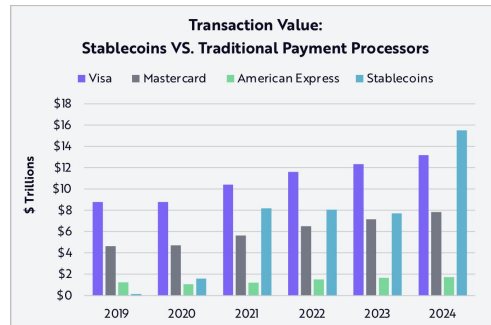
가상자산 시장 사이클과 관계 없이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 24년 전통 결제액(비자,마스터카드 합산액) 추월

올해 4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Source: Ark INVEST, 2025

2024년 기준 연간 결제 금액 15.6조 달러,
VISA의 119%, MASTER의 200%



Source: Ark INVEST, 2025

거래소 유동성 공급수단을 넘어 실생활 Use Case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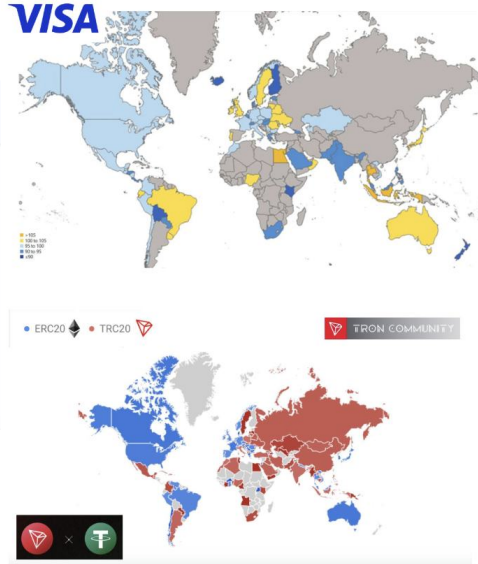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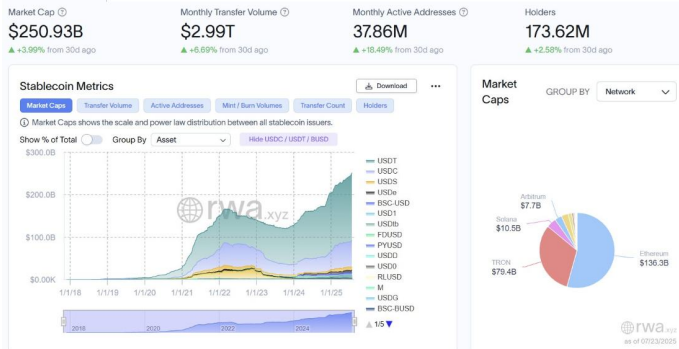
DSRV.

활용사례	비율	거래 금액	출처 및 설명
가상자산 거래 페어링	88%	23조 달러	CEX.IO, Chainalysis, CoinMetrics.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중 약 88%가 CEX 및 DEX간 차익 거래 및 유동성 라우팅 용도로 사용됨
온/오프 랩핑	4%	1조 달러	MetaMask, Crypto.com, Visa On Chain Dashboard. 거래소와 개인지갑간 자산 이동에 사용됨. 시장 이벤트 기간의 이용량을 고려해 약 4%로 추산
토큰화된 실물자산 결제	3%	0.8조 달러	Franklin Templeton, BlackRock, Allium. 토큰화된 MMF펀드 시범 거래량 및 온체인 국제 결제 초기 이용률 기준 약 3%로 추정
P2P결제	2%	0.5조 달러	Visa On Chain Dashboard, Circle, Chainalysis. 지갑간 송금 및 개인간 송금이 포함됨. 일상 결제 수단으로 성장하며 전체 거래량의 약 2%로 추산
소비자-기업간 결제(B2C/B)	2%	0.4조 달러	Visa On Chain Dashboard, Circle, Shopify, Stripe 등 Circle 상점 결제 데이터 및 온체인 소매 소비 추적 데이터 기반 약 1.5% 성장으로 추산
기업간 결제(B2B)	2%	0.4조 달러	Visa On Chain Dashboard, Chainalysis. 중소기업 및 핀테크 기업간 결제, FX 및 송장 처리 등 용도로 약 1.5% 성장으로 추정

Source: FOUR PILLARS, 2025

VISA와 MASTER가 지난 50년간 수십조 이상을 들여 전세계에 구축한 폐쇄형 결제망을 ETHEREUM, TRON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인터넷상에서 개방형 결제망으로 대체 중

DS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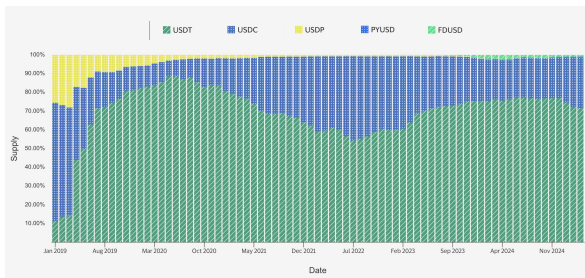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vs. 네트워크

DSRV.

세계 최대의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바이낸스의 기축통화 테더(USDT), 테더가 전송되는 주요 네트워크 트론(Tron)
 → 이에 맞서는 코인베이스(Coinbase), 서클(Circle), 이더리움, 솔라나,.. → 크립토 미중 패권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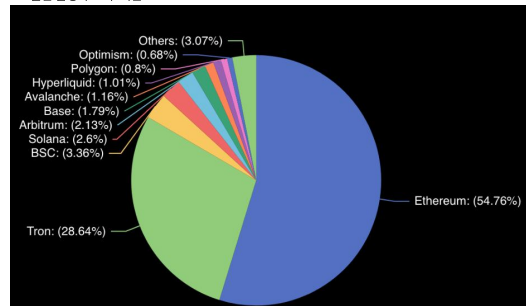
발행사별 시장 점유율



Source: Visa Onchain Analytics

스테이블코인 전송 네트워크 활성* 현황

*월간 활성 주소수 기준



Source: Visa, stablecoins the emerging market story

스테이블코인 발행액 순위(2025.8.20. 기준)

DSRV.

#	Name	Price	1h %	24h %	7d %	Market Cap	Volume(24h)	Circulating Supply
1	Tether USDT	\$0.9999	▼0.00%	▼0.06%	▲0.02%	\$166,995,492,409	\$133,481,135,566 133.49B	167.01B USDT
2	USDC USDC	\$0.9998	▼0.04%	▼0.02%	▲0.01%	\$67,869,571,382	\$18,519,496,936 18.52B	67.87B USDC
3	Ethena USDe USDe	\$1.00	▼0.01%	▼0.07%	▲0.01%	\$11,564,751,973	\$255,440,223 255.27M	11.55B USDe
4	Dai DAI	\$0.9999	▲0.01%	▼0.01%	▲0.02%	\$5,365,139,859	\$21,696,015,306 21.69B	5.36B DAI
5	World Liberty Financial USD	USD1	▼0.00%	▼0.05%	▼0.04%	\$2,185,903,166	\$353,385,611 353.60M	2.18B USD1
6	First Digital USD FDUSD	\$0.9973	▼0.03%	▼0.09%	▼0.08%	\$1,448,658,317	\$9,201,945,272 9.22B	1.45B FDUSD
7	PayPal USD PYUSD	\$0.9996	▼0.00%	▲0.00%	▲0.02%	\$1,213,116,520	\$87,777,165 87.82M	1.21B PY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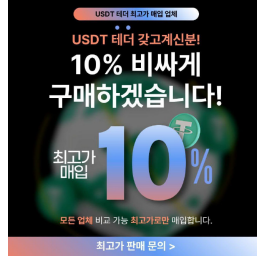
중남미는 이미 디지털달러(USDT, USDC) 일상 사용 중 → Dollarization 가속화

DSRV.



지금 우리는
시장은 이미 장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이 없으니, 음지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DSRV.



해외 송금 방식 비교

현금	구분	스태이블 코인
3~5영업일	송금시간	사실상 실시간
3~5%	수수료	0.1~0.3%
고시 환율+ 환율 마진(1~3%)	환율 적용	실시간 환율
수취인 계좌	수령방식	디지털 지급
은행 통해 정정 가능	송금 오류 처리	복구 불가능
금융 감독기관 보호	법적 보호	보호 불가

미국은 민간 화폐를 기본 통화로 수용 중
USDC는 디지털 기본 화폐가 되었습니다.
Genius Act로 제도화까지 마쳤습니다.

DSRV.



TRON: 인프라 수출로 성장한 중국의 전략

LATAM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체인 TRON.

USDT 유통망을 장악하며 나스닥 상장까지 연결됐습니다.

DS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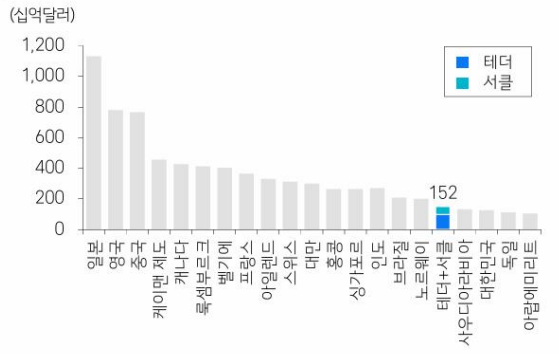


Part 3.

스테이블코인이 바뀌나갈 글로벌 금융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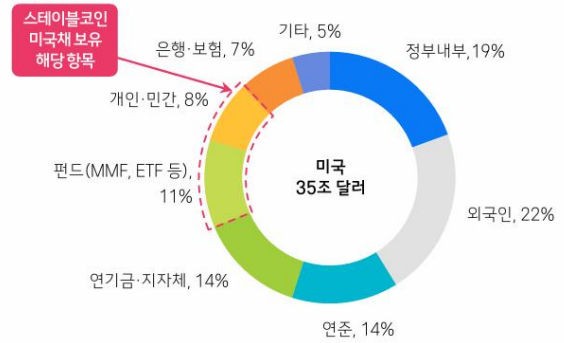
미 국가부채 해결의 Key 스테이블코인,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DSRV.

미국채 보유 순위



참고: 2025.3월말 기준, 서클은 미국채 Repo 계약 310억 달러 포함
자료: 삼성증권

국가 부채 breakdown



참고: 2024년말 기준
자료: Treasury.gov, 삼성증권

스티븐 미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피터 틸

DSRV.

스티븐 미란: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신임 연준 이사 → 강달러가 미국 수출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환율조정과 관세부과 필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1998년 페이팔부터 이어져온 비전 "PayPal was originally envisioned as a 'new world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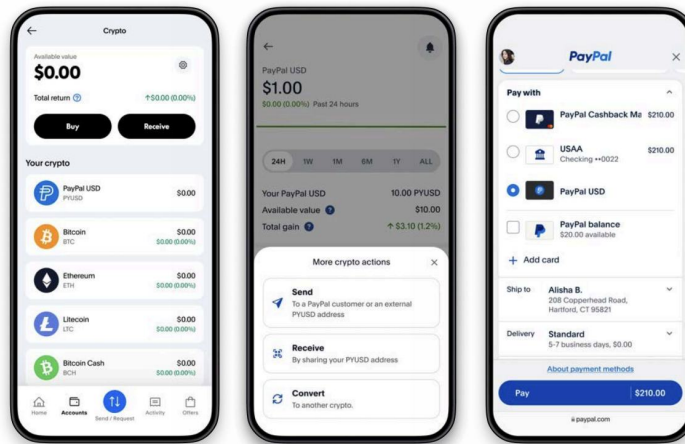


페이팔, 암호화폐 결제 수단 스테이블코인 포함

DSRV.

페이팔 암호화폐 결제 글로벌 사용 케이스 지속 증가 중

PayP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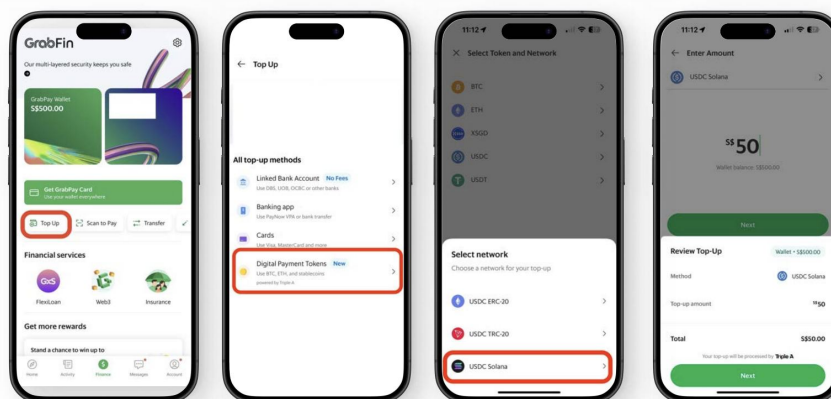


그랩,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불 가능

DSRV.

그랩페이의 지불수단에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되어있는 상황

GrabPay



PayPal, Stripe, VISA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로 활용

DS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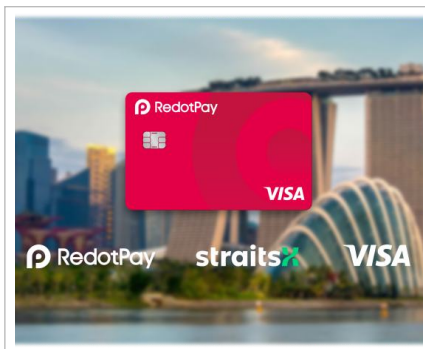
서비스 지역	금융 기업	블록체인 기업	서비스명	공동 협업내용
미국	PayPal	PAXOS	PYUSD	“블록체인 기업과 금융 기관의 협업으로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상품에 대한 발행, 전송, 관리 서비스를 제공”
	stripe	Bridge	Pay with Crypto	
	VISA	CIRCLE	VTAP	
	BlackRock	SECURITIZE	BUIDL, UStb	
일본	MUFG	prog///at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SONY	Soneium	스테이블코인	
싱가포르	Grab	straitsX	XSGD	
	Robinhood	PAXOS	USDG	

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와 홍콩, Web3.0 시대에도 앞서기 시작

DS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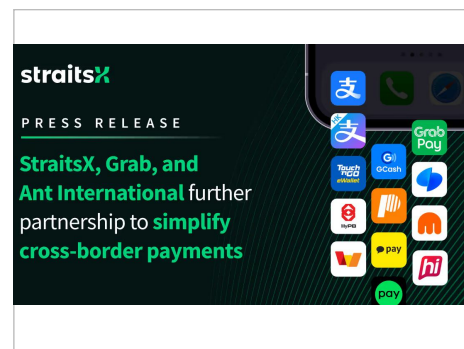
VISA네트워크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결제부터, Alipay+ 및 GrabPay 연동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

홍콩 리닷페이, VISA와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 결제 직불카드 서비스 시작



Source: RedotPay,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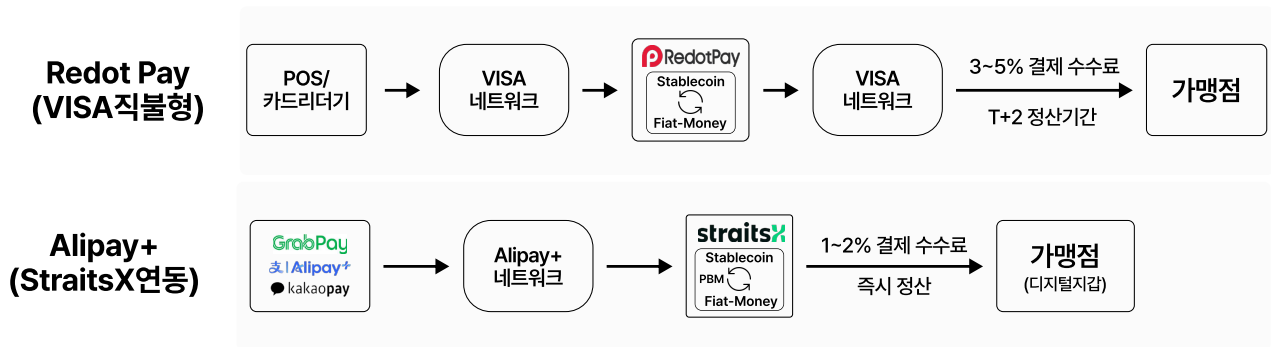
싱가포르 StraitsX, Grab/Alipay+와 협력하여 싱가포르 내 GrabPay가맹점에 국경간 결제 지원



Source: 싱가포르 StraitsX

스테이블코인 사업모델 - B2C

DSRV.



스테이블코인 사업모델 - B2B

DSRV.

JPMorgan의 JPMCoin과 JP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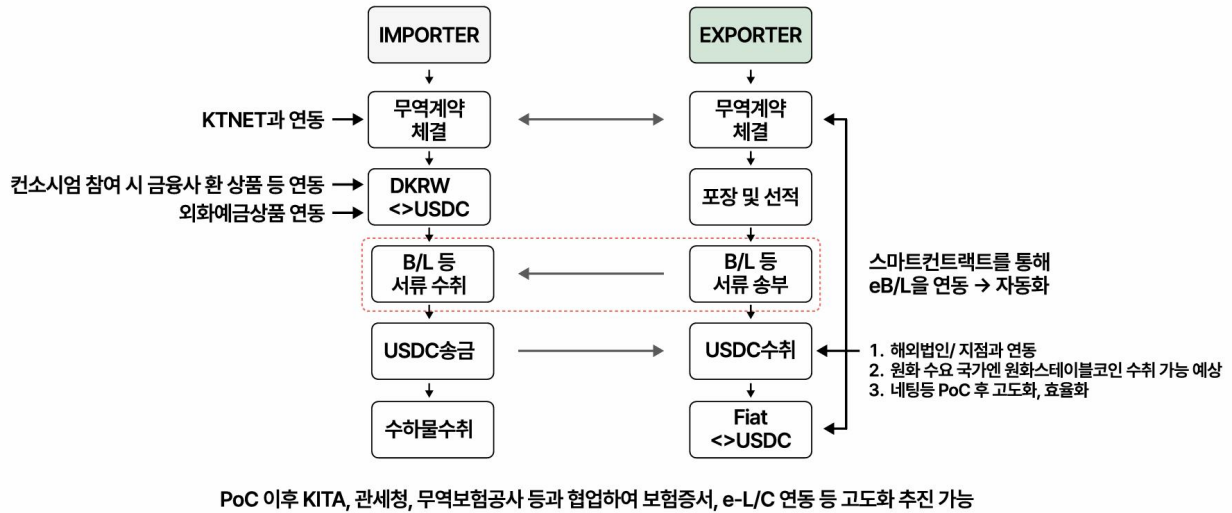
JPM Coin(Kinexys)	JPMD
Private Chain	Public Chain(BASE)
JPMorgan의 기관 고객	JPMorgan의 기관 고객
실시간 내부 자금 이체, 대금결제, JPMorgan 생태계 내 결제 등	실시간 자금 이체, 대금결제, 토큰화자산거래 등

상업은행 예치금 기반 토큰, JPMD



2025년 7월 현재, 일부 기관 대상 파일럿 테스트 추진 중

스테이블코인 사업모델 - 무역결제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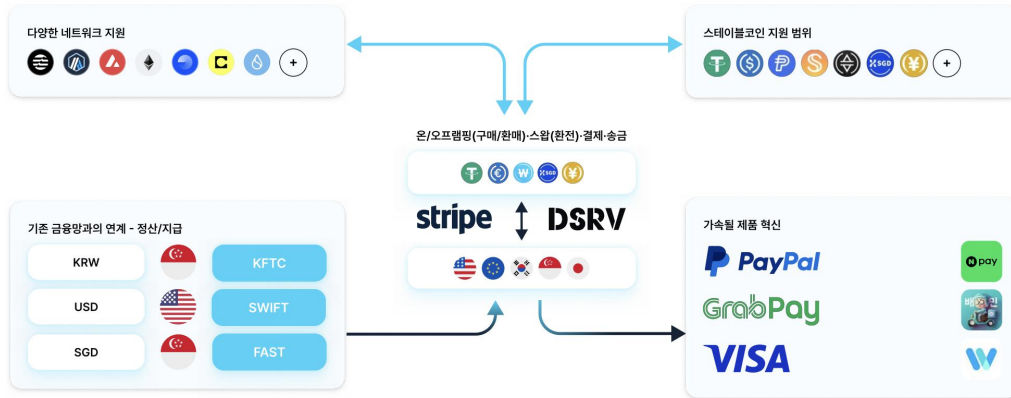
Robinhood, 유럽에서 토큰화된 미국주식 24시간 매매 서비스 출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연동을 위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

DSRV.

안정적인 블록체인 인프라운영, 스마트컨트랙트 무결성,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간 브릿징 등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높은 기술적 역량이 요구됨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아시아 금융허브의 새로운 비전

DSRV.



Epilogue.

World Wide Bank for Unbanked People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Unbanked People)을 위한 다음 세대의 금융 인프라 **DSRV.**



아프리카에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수출하겠다는 오랜 꿈

DS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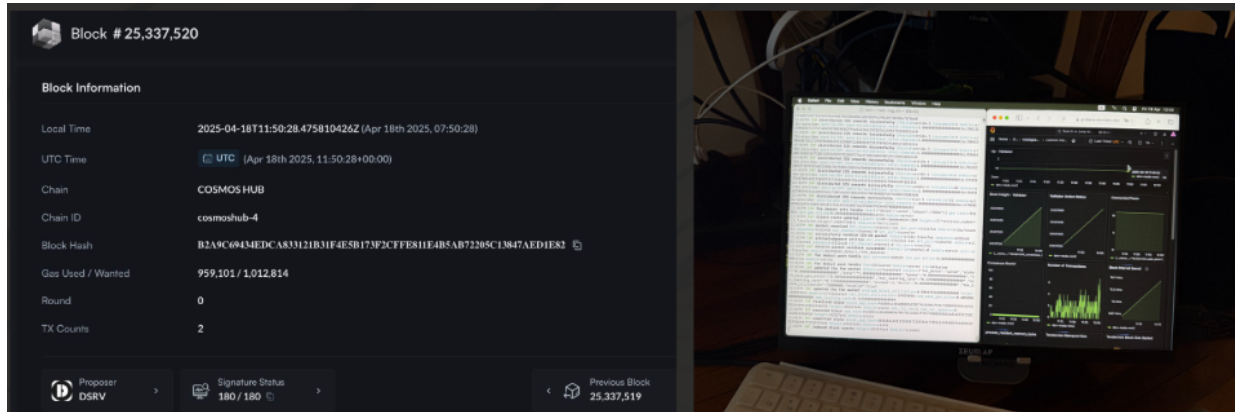
인터넷도 전력 공급도 불안정한 열악한 상황

DSRV.



역사상 최초로 마다가스카르에서 생성된 코스모스허브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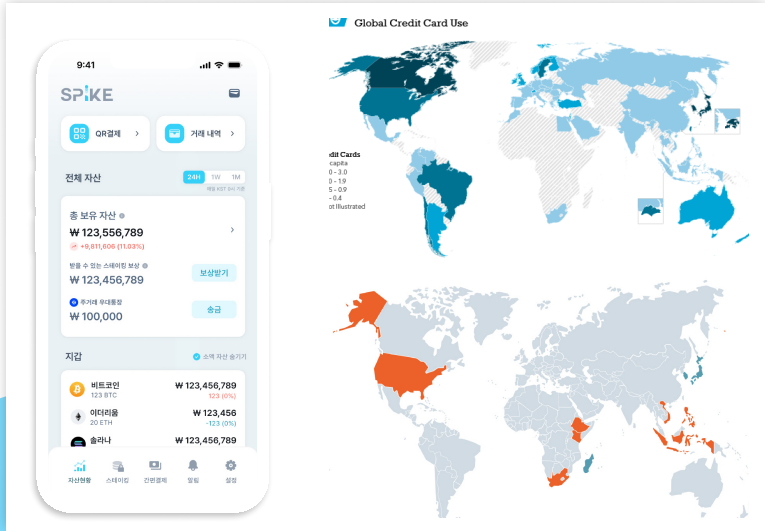
DSRV.



월드뱅크의 디지털 농업 바우처 지원을 위해 실시간 기록과 정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수출합니다.



우리는 *World Wide Bank*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의 OS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팀, **DSRV.**
 국경 없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DSRV.

감사합니다.

서병윤
 CSO · 미래금융연구소장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패널토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업계 기대감과 대응현황

-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요청사항
- 스테이블 코인 및 커스터디 등 주요 사업의 혁신과 정착, 성공적 확산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정책적 방향 등

좌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패널토론

패널



심태원 사무관

금융위원회



김경업 대표

오픈에셋



조진석 대표이사

한국디지털에셋



오종욱 대표

웨이브릿지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